

국립통일교육원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 안내

1 배 경

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를 규정하는 개정 「통일교육지원 법령」 시행('18.9월) 이후 각 기관의 통일교육 편의 제고를 위해 국립 통일교육원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러닝 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원

2 공동활용 개요

- 대상 콘텐츠 : 국립통일교육원 개발·소유 이러닝 콘텐츠
- 지원대상 : 「통일교육지원법」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
(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)
- 교육기간 : 연중
 - 1차 운영기관 : 1월~10월말까지 콘텐츠 요청 및 운영
 - 2차 운영기관 : 11월~12월말까지 콘텐츠 요청 및 운영

* 요청기관에서 콘텐츠를 요청하는 기간에 따라 분류
- 운영방식 : 자체 / 위탁
- 운영결과 : 활용결과(교육 이수인원 관련)를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제출
 - 1차 운영기관 : 11월 1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
 - 2차 운영기관 :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

* 제공받은 영상 폐기 확인 후, 결과보고 요망
- 담당부서 : 국립통일교육원 스마트교육팀 (02-901-7158)

-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콘텐츠를 제공받아 자체 또는 위탁운영 시 콘텐츠 관리 필요
 - 국립통일교육원 소유 영상물은 ‘저작권에 의해 보호 되고 있는 저작물이므로 타 기관 제공 및 정해진 기간 외 사용 시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제기’할 수 있음.

< 법령상 근거 >

■ 저작권법 제46조3항

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.

■ 저작권법 제124조1항

저작권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,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.

4 **공동활용 절차**

① 콘텐츠 요청
(요청기관)

요청기관은 통일교육 이러닝 콘텐츠 제공을 국립통일교육원(스마트교육팀)에 공문으로 요청(사전협의)

○ 공문 기재 내용

- 이러닝 과목명 : 「역사에서 배우는 한반도 평화통일」
- 교육기간
 - * 1차 운영기관 : 1월~10월말까지 요청 및 운영
 - * 2차 운영기관 : 11월~12월 말까지 요청 및 운영
- 교육인원 : 요청 기관 정원
- 운영방법 : 자체 / 위탁 중 선택
 - * 위탁 운영 시 해당 업체명, 담당자 성명, 전화번호
- 담당자 이메일 주소 : 콘텐츠(영상)을 수신할 이메일 주소



② 콘텐츠 제공 승인 회신
(국립통일교육원)

국립통일교육원 콘텐츠 제공 요청에 대한 승인 공문 발송

- 승인 공문 발송 후 일주일 내 요청기관 담당자 메일로 영상 발송
- * 국립통일교육원 담당자 : 02-901-7158



③ 통일교육 실시
(요청기관)

요청기관은 승인 공문 접수 후 통일교육 실시

- 위탁 운영 시 위탁업체에게 제공할 영상과 국립통일교육원 콘텐츠 활용 승인 공문을 함께 제공
- 위탁업체가 다른 기관에 영상을 제공하거나, 교육 후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유하지 않도록 주지



④ 콘텐츠 활용 결과 통보
(요청기관)

콘텐츠 활용 결과를 국립통일교육원(스마트교육팀)에 공문으로 제출

- (국립통일교육원) 활용결과 제출 안내 공문 발송
 - 1차(10월), 2차(12월)
- (요청기관) 활용결과 제출
 - 제출기간 : 1차 운영기관 (11월 10일까지)
2차 운영기관 (다음해 1월 10일까지)
 - 제출내용 : 활용결과 양식(교육 이수자 관련 자료, 영상 폐기여부 등), 이수자 확인자료(개인정보 최소화)
 - *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업체에게 영상 폐기 관련 재확인